

1. 투고 자격은 본 학
2. 정회원은 본 학술
까지 가능하며 연
3. 투고 논문은 본 학
가진 논문을 원칙
것이어야 한다.
4. 국문 논문은 한글
성하는 것을 원칙
(서평의 경우 20
과 200자 원고지
일-문서정보-문서
A4용지 25매 또는 200자 원
없다. 영문 및 기타 외국어
단어) 이 를 원칙으로 하되
사에서 제외한다.
5.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가
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평화학연』에는 제1저자를 기준으로 동일기관 소속의
동일기관 소속이 2편을 초과할 경우 전체 평점이 높은 순위로 해당 호에 우선 게재여
부를 확정하며 나머지 논문의 경우는 차기 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7. 투고 논문의 제출은 본 학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한다. 국문제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며, 국문제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영문), 위(국·영문), 전화번호, 주소, Fax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국문제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작성한다. 국문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제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의 경우에는 영문제목과 영문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표지한다. 주제어는 국·영문을 망라하여 5개 이내로 한다.
8. 논문의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다만 국문제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의 번호는 “ I …, 1 …, 1) …, (1) …, ① … ”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시한다.
 - 1)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할 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한다.
 - 2) 투고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 인명 및 지명은 한글(원어 표기)로 쓴다. ~~원어 표기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의 경우에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안에 외래어를 부기한 다<예시: 세계화(globalization)>. 인명의 경우에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명(한자명),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한글 표기의 외국인명(원어 명) 또는 외국지명(원어명)을 부기한다<예시: 김궐(金九), 후진타오(胡錦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조지 부시(George Walker Bush),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뉴욕(New York), 베이징(北京), 도쿄(東京)>.
9.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10. 심사시 투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고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에는 ‘졸고’ 혹은 ‘졸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그 대신 반드시 투고자의 지칭 이름을 밝혀 적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 및 참고문헌 등에서도 투고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언급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논문 투고자는 원고접수와 함께 학회은행계좌(하나은행, 216-910002-90404,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궐 학회)로 소정의 연회비(5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1 또한 계
기관에서

1 발로 제출해
한 '수정 정

1 소논문에 대한

1 다음의 작성 기준
있다.

[

1. 연 한다.

*** 단**

- 1) 백 랜덤
- 2) 주 (서울:
- 3) S *ical* w Haven, Connecticut: Yale
- U
- 4) M ywald and M *mation o a* (New York:
- F 2.
- 5) J (New Ha tsity Press, 2007), 89.
- (사 전부 표기, 그 al'로 표기)

*** 논 부분(소논문, 장 또**

- 1) 주 급변사태 개연성: "중심으로." 『평화학연』 제9권 3호 (2008),
- 1
- 2) 주 노찬백, "김정일시대 주요 치담론의 실권상 특장에 관한 고찰." 『일정책연』 제15권 1호 (2006), 25-26.

3) 김성민

김이성

4) Hun K

Nuclea

Prospe

5) Carlos

ed. Wa

6) Micha

at

Georg

*** 학위논문**

1) 배진석

박사 학

2) Mihwa

*** 학회발표**

1) 조철호

우리정

동계학

2) Sung J

Reflec

Knowl

Affairs

*** 연구총**

연구보고서

1) 허문영

(서울: ~~한일연~~원, 2007), 125.

2) Marcus Noland,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 C., 2003), 33.

* 신문기사 또는 잡지의 기사

- 1) 이수민, “동북아 협력안보레짐.” 『중앙일보』, 2007. 4.
- 2) 반이정, “사전과 경전의 기묘한 권위.” 『한겨레 21』
- 3) Axel Berkofsky,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 웹사이트

- 1) 김일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검색일 2007년
- 2) Sheryl Gay Stolberg and Robert Pear, “Wary Centrist Vote.” *nytimes.com*, February 27, 2010, accessed <http://www.nytimes.com/2010/02/28/us/politics/>

* 재인용

- 1)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66.
- 2) Moodie, “The Chemical Weapons Threat.” 22.
(‘위의 글’, ‘앞의 책’, ‘전계서’, ‘상계서’ 등의 표기 금지)
2. 표와 그림(또는 사진)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알린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표와 그림의 하단 부분에 ‘출처: ’라고 표시하고 그 자료를 밝힌다 <예시= 출처: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11), 172>. 단, 표와 그림의 주가 있을 경우에는 하단에 개별 주, 일반 주, 출처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 참고문헌의 작성 ■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 문헌, 북한문헌,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 등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한글과 한자의 경우에는 가나다순, 그리고 외국어의 경우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저서명, 출판사 지역명, 출판사 명, 출판 연도의 순서로,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 논문제목, 편·저자, 저서명, 출판사 지역명, 출판사 명, 출판 연도의 순서로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 단행본**

- 1) 박성조. 『
- 2) 김철경 외
- 3) Huntington, Samuel P.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96.
- 4) Creveland, John. 『The Great Wall of China: A History of the Great Wall of China』 New York: Free Press, 1997.
- 5) James Lee Ra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에서 'et al'로 표기)

*** 논문 및 책**

- 1) 김수민. “김정일시대 개연성: 『』 중심으로.” 『평화학연』 제9권 3호 (2006), 1-11.
- 2) 김태운. “김정일시대 주요 『』의 실천상 특징에 관한 고찰.” 『일정책연』 제15권 1호 (2006), 25-46.
- 3) 김성민. “미국의 동북아안보정책과 군사혁신.” 『동북아의 평화론과 평화』 상, 김이성(편), 110-130. 서울: 동북, 2004.
- 4) Lee, Hun Kyung. “Corresponding Steps and Further Approaches for North Korean Nuclear Solution through Application of Game Theory, Bargaining Theory, and Prospect Theory.” 『International Pacific』 19(4) (2008), 63-87.
- 5) Marighella, Carlos. “From the Mini-Manual.” 『New American Library』 edited by Walter Laqueur, 67-83.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8.
- 6) Moodie, Michael L. “The Chemical Weapons Threat.”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edited by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33-55.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 학위논문**

- 1) 배진석. “양분화이론으로 본 동아시아의 해양안보질서와 해군력의 역할.” 동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1.
- 2) Choi, Mihwa.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 학회발표논문

- 1) 조철호.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한반도의 외교·인보·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정부의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연·학회 2012 동계학술회의, 2012년 12월 3일, 1-9.
- 2) Park, Sung Jo. “Divergent Political Approaches toward Unification Policy: Reflections and Implic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nowledge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Korea Institution of Public Affairs,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5, 2005.

* 연구총서 또는 연구보고서

- 1) 허문영·오일환·정재호. 『남북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KINU 연구총서 07-10.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2) Noland, Marcus. *China'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Working Paper 03-5.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 C., 2003.

* 신문기사 또는 잡지의 기사

- 1) 이수민. “동북아 협력안보레짐.” 『중앙일보』, 2007. 4. 12.
- 2) 반이정. “사전과 경전의 기묘한 권위.” 『한겨레 21』 제645호 (2007).
- 3) Berkofsky, Axel.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Washington Times*, July 14, 2003.

* 웹사이트

- 1) 김일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검색일 2007년 4월 5일. <http://www.ilminkor.org>.
- 2) Stolberg, Sheryl Gay and Robert Pear. “Wary Centrists Posing Challenge in Health Care Vote.” *New York Times*, February 27, 2010.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www.nytimes.com/2010/02/28/us/politics/28health.html>.

* The Chicago Manual of Style
(http://www.chicagomanualofstyle.org/tools_citationguide.html)

<부칙> (2004.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6.04.02)

제1조 본 규정은 200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2)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2)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2)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02)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11)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